

提

言

需要·供給 조절 및 優秀藥劑

農藥管理法의

머리말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80년 12월 31일자로 새 농약관리법이 법률 제3322호로 공포되고 그에 따른 농약관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각각 지난 2월12일자(대통령령 제10195호), 및 3월 26일자(농수산부령 제822호)로 공포되었다.

농약관리법은 이미 제 1 공화국 시절인 1957년 8월28일에 19개조의 규모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었는데, 69년 5월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다가 77년 12월31일에 전면 개정되었었다(33개조규모). 그것이 꼭 3년만인 작년말에 또 다시 전면 개정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농약관리법이 비교적 자주 개정되고 그것도 수년 사이에 두 번씩이나 전면 개정이 되었다는 것은 농약의 수요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급속히 커져가고 있다는 것과 농약업계 및 농약관리 행정체

계에 많은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어떻든 이번의 전면 개정은 농약업계나 농약의 수요자인 농민들에게 매우 비상한 관심을 모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이번 개정법에서 구법과 크게 달라진 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논평을 간단히 해 보고자 한다.

중요 개정내용

1. 농약등에 새로운 정의

농약관리법은 최초의 법에서부터 동법이 사용하는 몇개의 중요한 용어에 대해 복잡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정의(定義)를 내리고 있는 바 이번의 새법에서는 우선 이 용어정의부터 많이 바뀌어졌다(신법 제2조 참조).

(1) 농 약

첫째, 구법(舊法)에서는 농약을

개발에 主眼點

개정을 보고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 포함)을 해하는 균·선충(線虫)·응애·곤충·식물·바이러스 기타 병충해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기타 약제(농작물의 병충해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포함)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의 증진 또는 억제에 사용하는 생장조정제”를 말한다 고 하였다.

그런데 신법에서는 첫째 「식물...의 방제」를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의 방제」로 바꾸어서 식물외에 동물도 방제대상으로 포함시키되 그 구체적인 종류는 농수산부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새로나온 농수산부령(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달팽이와 잡초가 이에 해당한다(규칙 제 2조).

둘째, 살균제·살충제·제초제·생장조정제 외에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를 농약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새로운 분야의 농약개발에 따른 조치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최 병 옥

(2) 농약명·품목·원제

구법에서는 이에 관해 정의규정을 따로 모아둔 것이 없었으나 신법에서는 이를 각각 명문화 하였다(제 2 조제 2 호).

① 농약명: “농약명”이라 함은 주된 적용병해충·적용지목 또는 용도에 따라서 명명(命名)한 것을 말한다.

② 품목: “품목”이라 함은 유효 성분량 및 제제형태(製劑形態)가 동일한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그러므로 각각 다른 제조업자가 동일한 품목을 제조할 수 있다.

③ 원제: “원제”라 함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농약제조용의 주자재를 말한다.

(3) 제조업·수입업·원제업

구법에서는 “제조업”이라 함은 농

■ 제언 : 농약관리법의 개정을 보고 ■

약을 제조(가공 포함)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을 말하며, “수입업”이라 함은 농약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원제를 수입하여 농약을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고 하여 판매업자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업등을 크게 제조업과 수입업으로만 나누었으나, 신법은 원제업을 수입업에서 떼어내어 「“수입업”이라 함은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수입업은 문자 그대로 순수한 수입업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그대신 새로 원제업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원제업”이라 함은 원제를 합성·제조하여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체 농약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한다」고 하였다(제 2조 제 3항).

2. 농약의 수급조절과 농협, 농약계정설치

농약이 적절한 시기에 차질없이, 그리고 적절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공급되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먹고 사는 모든 국민의 요청이다. 또 이것은 농약업계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필요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구법에서도 제 19조(농약의 수급) 및 제 20조(농약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를 두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앞부분인 제 3조, 제 4 조로 가져오고 그 내용도 크게 바뀌어졌다.

(1)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농수산부장관은 농약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 수급의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명할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농약을 비축, 공급하게 할 수 있다(3조 1항).

구법 제 19조에서는 농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농약 기본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농약을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었는데, 신법에서는 첫째로 농수산부장관의 수급계획수립규정을 삭제하여 이에 관한 법적 의무를 면해주고 둘째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 판매업자등에게 수급조절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명령제도는 신법에서 새로 마련된 중요한 것중의 하나이다.

3. 제조업·수입업의 감독체계 개편

이번 신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농약업자에 대한 농수산부의 감독체계의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제조업 및 수입업에 관하여 보면 구법하에서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품목을 추가하려면 다시 그 허가를 받게 하였었다(구법 4조). 즉 제조업이나 수입업을 그 품목과 함께 묶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제조업 및 수입업 자체만을 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품목에 관해서는 농수산부장관이 이를 미리 고시하며, 허가받은 업체가 이 고시된 품목중에서 자유롭게 어느것을 선택하여 제조나 수입을 하되 그 품목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다음에서 이에 관한 신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1) 제조·수입업의 허가등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수입업을 할 수 있다(제 7조 1항) 허가신청 절차는 농약관리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제 7조 2항), 이에 관하여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의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그 시설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시행규칙 제 7조에 정해져 있음)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 7조 3항).

또 그营业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營業을 재개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 7조 4항).

이와같이 양도·임대의 승인을 받게 하거나 휴업·재개의 신고를 하게 한 것은 농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약의 수급조절의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2) 품목의 등록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시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

■ 제언 : 농약관리법의 개정을 보고 ■

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 8조 1항). 품목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 9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 품목등록 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법에서 새로 생긴 제도로서 구법하에서는 이것도 허가대상이 되어 있었다.

등록품목의 제조 또는 폐지나 휴지(休止) 및 휴지의 재개 등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내에 농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제 8조 2항, 3항), 이것도 농약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여진다.

(3) 제조·수입업의 허가취소

농수산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① 비고시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거나 ② 승인없이 영업의 양도나 임대를 하거나 시설변경을 하거나 하는 경우등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 12조).

4. 원제업·판매업 방제업의 등록

원제업과 판매업은 구법하에서도 등록제로 되어 있었지만, 신법에서는 그 내용이 약간 달라졌다. 한편 방제업은 종래 신고제로 되어 있었는데 신법에서는 그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를 등록대상으로 바꾸었다.

(1) 원제업의 등록

원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 그 합성·제조 하고자 하는 원제의 종류와 함께 농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원제의 종류를 추가하여 합성·제조 하고자 할 때에도 등록은 하여야 한다(제 9조 1항). 원제업의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 10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원제업자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지 및 휴지의 재개를 할 때에는 소정 기일내에 농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 9조 2항, 3항)

(2) 판매업의 등록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 그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 10조 1항). 그 절차는 시행규칙 제 11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 10조 2항).

(3) 방제업의 등록

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식물의 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 11조 1항). 그 절차는 시행규칙 제 12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방제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재개를 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관할 도지사 또는 식물 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 11조 2항).

5. 품목의 고시와 고시를 위한 시험

위에서도 여러번 말했지만 신법에서는 농약의 제조나 수입에 있어서 품목에 관하여는 허가제를 지양하고 품목은 등록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품목고시제를 채택하였다. 한편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제도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우수농약을 개발토록 하고 있다.

(1) 품목의 고시

농약의 품목은 농수산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제 5조 1항). 즉 전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따로 따로 품목을 정하여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따로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관보를 통해 미리 고시된(시행규칙 제 3조) 품목중에서 택하면 되도록 되었다. 그대신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의 농약은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 품목의 농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5조 2항). (농약의 품목별 고시사항과 품목결정 등을 위한 농약관리위원회등에 관하여는 제 5조 3항 내지 6항을 참조하면 된다).

(2) 고시품목을 위한 시험

구법하에서는 농약의 품목을 업자가 결정하고 그 품목의 약효, 약해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을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에게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제조나 수입의 허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품목고시제가 채택됨으로써 이러한 절차를 바꾸어, 농수산부장관이 품목고시를 할 때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시험을 하게 하였다(제 6조 1항). 농촌진흥청장은 이 시험을 직권으로도 하지만, 관제기관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신청

■ 제언 : 농약관리법의 개정을 보고 ■

에 의하여서 할 수도 있으며, 또 이 시험을 다른 전문 기관에 의뢰하거나 그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시험비용은 그 고시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부담한다(제 7 조 2항 내지 5항).

(3) 농약관리 기금 설치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비용등의 부담을 위해 농약관리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 기금의 관리 및 기금의 재원, 용도등에 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 22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6. 벌칙의 대폭 강화

신법의 또 하나의 특색은 벌칙을 대폭적으로 강화했다는 것이다. 신법에서는 벌칙에 관해 제 25조 내지 제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구법상의 벌칙규정에 비해 그 내용이 좀 더 세분화되고 그 형량은 훨씬 무거워졌다. 예컨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업이나 수입업을 한 자는 구법에 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었지만 신법에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자세한 처벌 내용은 법문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생략한

다.

이밖에도 이번의 새 법에서 바뀌어진 것이 많으나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맺는 말

1957년에 처음 제정된 이래 농약관리법은 여러차례 부분적 또는 전면적 개정을 하여왔다. 처음에는 주로 농약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주안점이 있었으나 점차 농약공해가 심해지자 유독성농약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편 가격조정 및 수급조절면에도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의 가장 큰 특색은 무엇보다도 농약관리행정체제의 변혁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행정당국의 규제일변도에서 농약업체의 자율성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인정하고 그 반면에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하겠다.

앞으로도 관계당국 농약업체 및 농약수요자들이 계속 연구하여 농약관리법이 좀 더 좋은 법으로 발전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